

구미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발의연월일	2022. . .
발 의 자	김영길 의원 외 5명

구미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(김영길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2. . .

발 의 자 : 김영길 · 권재욱 · 김낙관 · 김춘남
안주찬 · 장미경 의원(6인)

1. 제안이유

구미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미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상담소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, 제2조)

나. 상담소의 기능, 상담대상 및 방법(안 제3조, 제4조)

다.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 제9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」 등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구미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원만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구미시 노동상담소(이하“상담소”라 한다)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) ① 구미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노동관련 상담을 위하여 관내에 상담소를 설치·운영한다.

② 시장은 상담소 설치·운영에 필요한 행·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.

제3조(기능) 상담소는 노동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노동자의 복지 증진 및 기업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상담소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
2.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 상담
3. 노동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및 법률상담
4. 노동관계법 상담 및 교육
5. 노동존중 문화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
6.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, 노동권익보호, 상생 노사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4조(상담대상 및 방법) ① 관내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노동자 및 노사업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.

② 상담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, 서면·전화·출장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.

③ 상담은 주중에 실시하며, 상담시간과 요일은 조정할 수 있다.

제5조(위탁운영) ① 시장은 필요시 상담소를 관계법령 및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및 노동단체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상담소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법령 및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사업자를 공모·심사하여 선정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관계법령 및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.

제6조(협약 체결 등) ① 위탁관리·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·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시장과 위·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위·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관리·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.

제7조(위탁계약의 해지) ① 시장은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

- 2. 운영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
 - 3.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할 때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8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상담소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조례의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

- ② 수탁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.

제9조(지도감독) ① 시장은 상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할 때 수시로 지도·감독 할 수 있다.

- ② 수탁자는 지도·감독에 협조하여야 하며, 시장은 지도·감독 결과,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10조(다른 조례의 준용)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」

- 제3조(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,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,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지역 노사민정”이라 한다)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,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3조(적용범위)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사무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

구미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- 노무사를 비롯한 직원 인건비, 찾아가는 법률상담교육, 홍보 및 캠페인, SNS·카드뉴스,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등 사업추진에 따른 제정소요가 예상됨.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비용추계 기간 : 2022년 ~ 2025년
- 노동상담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, 사업추진비 등의 운영비를 추계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합계
구분						
세출	○ 인건비, 운영비 등	175,000	180,000	185,600	191,200	731,800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합계
구분						
국 비		-	-	-	-	-
도 비		15,000	15,000	15,000	15,000	60,000
시 비		160,000	165,000	170,600	176,200	671,800
민 간		-	-	-	-	-
기 타		-	-	-	-	-
합 계		175,000	180,000	185,600	191,200	731,800

5. 부대의견

- 본 추계결과는 사정에 따라 재정수반액이 변경될 수 있음

6. 작성자 : 노동복지과 노사정책계 신태철 (054-480-6204)

Ⅱ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- 1차년도 : 175,000천원
 - 인건비(운영인력 5명) : 158,000천원
 - 사업비 및 운영비(교육,컨설팅,홍보,사무관리비 등) : 17,000천원
- 2, 3, 4차년도 : 매년 인상을 3% 반영